

의안번호	제656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8월 23일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656
----------	-----

제출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은 내수면산업연구소(충주, 본소) 내 노후화된 경제성 어종연구동을 철거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3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하였고, 건립규모는 4필지 1,040㎡(1동, 지상2층), 사업비는 60억원(국비 36, 도비 24)임
-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은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충북 문화예술의 주요 거점 조성을 위해 도립 공연장을 신축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규모는 부지 12,766㎡, 연면적 36,688㎡이고 사업비는 2,200억원임
- **청남대 인접 사유지 매입**은 청남대 최초 조성 시에 철책, 데크 등 지장물이 사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고, 해당구조물 철거비용이 토지 매입 비용에 비해 과다하여 인접 사유토지 5필지, 162,844㎡를 3억 4천만원에 매입하여 민원 해소 및 향후 관람객을 위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등)의 공인시험 분석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도유지 6,626.3㎡를 16억원에 매각하고자 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일반회계

- 위 치 : 충주시 충주호수로423(용탄동 87외 4필지)
- 사업기간 : '23. 1. ~ '26. 12.
- 사업규모 : 1동(1,040㎡, 지상 2층)
- 사업비 : 60억원(국비 36, 도 24)
- 내용 :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으로 양식장 배출수 수질오염 저감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53-13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內)
- 사업기간 : '2024 ~ '2030.
- 사업규모 : 부지 12,766㎡, 연면적 36,688㎡(지하2, 지상4)
* 총 부지규모 : 19,766㎡(5,979평) ※ 총 면적 : 도서관(7,000㎡) + 아트센터(12,766㎡)
- 사업비 : 2,200억원(도비)
- 내용 : 콘서트홀(1,500석), 중극장(680석), 스튜디오극장(300석), 다목적 공간 등

《청남대 인접 사유지 매입》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 52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24. 8. ~ 12.
- 매입규모 : 임야 162,844㎡, 5필지
- 사업비 : 3억4천만원 (탁상감정가)
- 내용 : 청남대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소 및 관람객 위한 편의공간 제공

□ 재산의 처분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4-2
- 처분규모 및 시기 : 1필지 6,626.3㎡ / '25년 1월 이후
- 재산가액 : 16억원(241,463㎡/원)
- 매수자 : 충북테크노파크
- 매각사유 :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성능비교시험 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
- 매각방법 : 수의계약(「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6필지	175,610	10,341,973				
	건물	2개동	37,728	226,0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충주시 충주호수로 423 (용탄동 87 등)	1,040	6,000,000	2026.12. 예정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신축
	기타							
2	토지	충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53-13일원	12,766	10,000,000	2025	(가칭)충북아트센 터 건립	충북개발 공사	매입
	건물	충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53-13일원	36,688	220,000,000	2030	(가칭)충북아트센 터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문의면 문덕리 산52	73,809	154,999	2024	청남대 내 사유지 매입	박○○	매입
		문의면 문덕리 산52-1	373	783	2024	청남대 내 사유지 매입	정○○	매입
		문의면 문덕리 산53	19,835	41,654	2024	청남대 내 사유지 매입	오○○	매입
		문의면 문덕리 산55-1	32,926	69,145	2024	청남대 내 사유지 매입	오△△외 3	매입
		문의면 문덕리 산56-1	35,901	75,392	2024	청남대 내 사유지 매입	오□□	매입
	건물							
	기타							
4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202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면적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 수 희망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4-2	6,626.3	6,626.3	1,600,000				
	건물								
	기타								
1 (매각)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4-2	6,626.3	6,626.3	1,600,000	2025.1 이후	충북TP '바이오 의 약품 소재 부품 교 실증 센터'건립 의 성 능 하 향 을 위 한 토 지 매 각	충북 테크노 파크	
	건물								
	기타								
2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